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검 사 정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미 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감찰3과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체·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2020. 2. 20. ~ 3. 5.)

대통령령 제 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합계의 검찰연구관란 “34”를 “32”로, 합계의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란 “20”을 “21”로, 합계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란 “7”을 “8”로, 대검찰청의 검찰연구관란 “34”를 “32”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란 “20”을 “21”로,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란 “7”을 “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